

●기획재정부고시 제2024-17호

「관세법」 제51조에 따른 「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」(기획재정부령 제1065호) 시행과 함께 동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고시를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4년 04월 30일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**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 폐지**

「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」(기획재정부고시 제2024-6호, 2024.3.14.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